

2024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고용노동부

목 차

I . 일반현황	1
II .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괄	3
1. 편성 방향	3
2. 총지출 규모	3
3. 주요사업 편성내용	4
III .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11
1. 예산	11
2. 고용보험기금	34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6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0
5. 임금채권보장기금	67
6. 근로복지진흥기금	71

I. 일반현황

* 2024. 1.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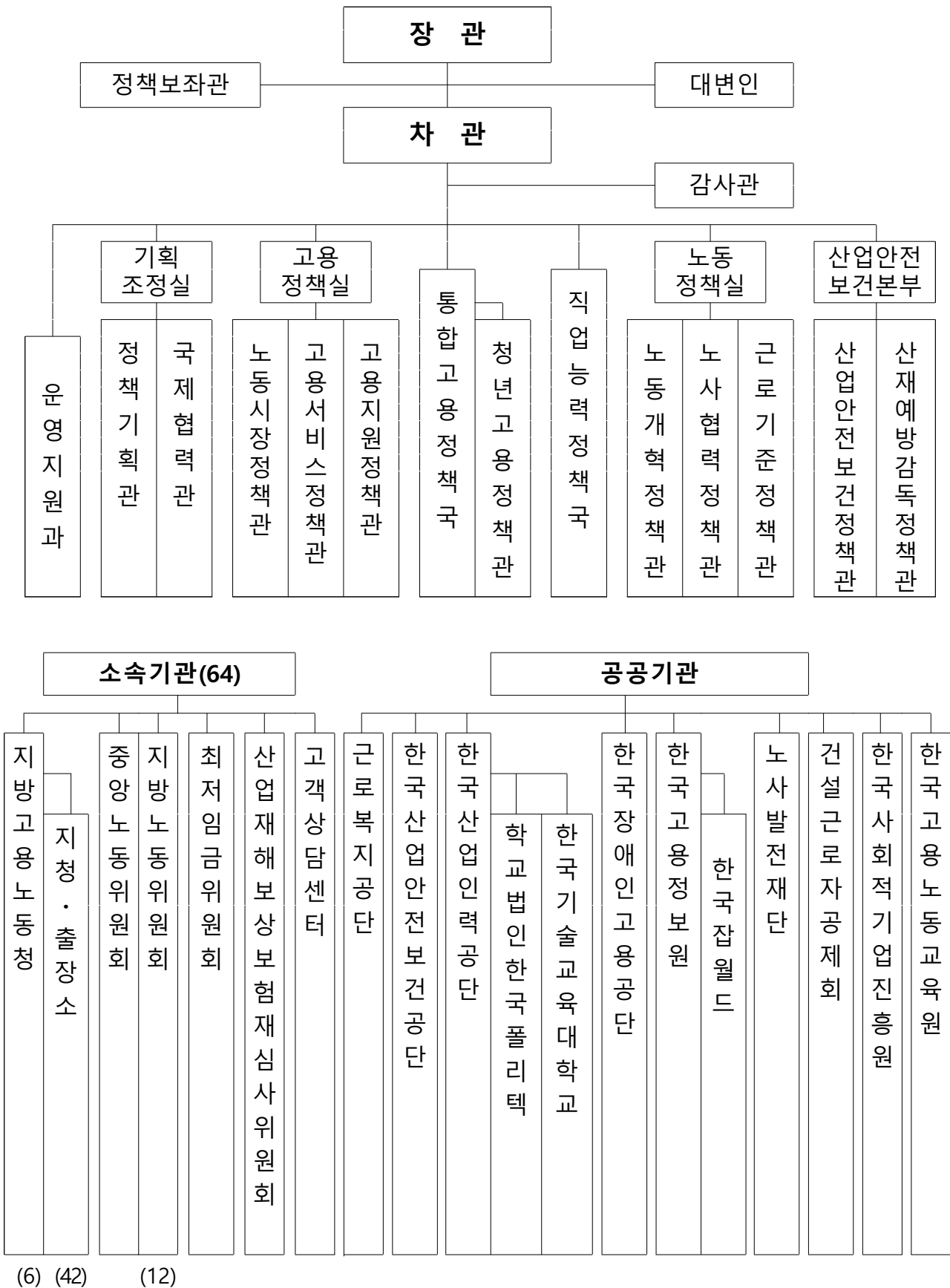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8,198명

- (본부) 3실·1본부·1대변인 2국 12관 51과 7팀(652명)
- (소속기관) 64개소(7,546명)
 -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7,060명): 청 6, 지청 40, 출장소 2
(고용센터 101개소 포함)
 - 위원회(15개, 427명):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 지방노동위 12),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고객상담센터(59명)

□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공기관 20,137명

구분	단 체 명	기구 및 주요기능	정 원
준 정부 기관 (5)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재활, 고용·산재보험 적용, 산재병원 운영	9,99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교육, 산재예방기술 개발·보급	2,17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외국인력 도입 및 해외취업 지원	1,822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1,450명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 국가고용전산망 운영, 중장기 국가인력수급 전망	521명
기타 공공 기관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가기간산업, 신성장분야 기술인력 양성	2,719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훈련교·강사 양성 및 재교육, 평생능력개발훈련 지원	638명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 협력교육, 일터혁신 지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창업지원,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지원	299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퇴직공제금 지급 등	221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등	123명
	한국잡월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관련 정보 전시·제공	65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115명
유관 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복지정책 등의 협의	41명

□ 조직도



Ⅱ.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괄

1. 편성 방향

❖ '24년 부처 예산은 33조 6,825억원 편성(전년 대비 △3.6%)

* <20> 30.5조원 → <21> 35.6조원 → <22> 36.6조 → <23> 34.95조 → <24> 33.68조

◇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 집중

- 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②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③ 노동시장 참여 촉진

2. 총지출 규모

□ '24년 예산은 33조 6,825억원, '23년 대비 1조 2,680억원(△3.6%) 감소

○ 회계 5조 8,151억원, '23년 대비 8,590억원(△12.9%) 감소

기금 27조 8,674억원, '23년 대비 4,090억원(△1.4%) 감소

< '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억원, %)

회계·기금별	'23년 예산 (A)	'24년 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 총지출(a+b)	349,505	336,825	△12,680	△3.6
- 예산지출(a)	66,741	58,151	△8,590	△12.9
· 일반회계	59,193	51,306	△7,887	△13.3
· 특별회계	7,548	6,845	△703	△9.3
- 기금지출(b)	282,764	278,674	△4,090	△1.4
· 고용보험	169,107	164,058	△5,049	△3.0
· 산재보험	96,406	98,222	1,817	1.9
· 장애인	8,478	9,053	576	6.8
· 임금채권	6,357	5,431	△925	△14.6
· 근로복지	2,417	1,908	△509	△21.1

3. 주요사업 편성내용

1.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상생협력 확산 지원(210억): ▲업종별 임금실태조사(4억)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 ▲**신규**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 **(복지 확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퇴직연금운영: <23> 156억 → <24> 223억(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192억원))
✓ 근로복지기금: <23> 155억 → <24> 233억(원·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年 최대 20억 지원(기존 10억))

- **(역량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²³ 1.3만 → ²⁴ 2만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3> 3,030억 → <24> 3,568억
↳ ▲기업직업훈련카드(23. 307억 → 24. 476억) ▲**신규**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 10만명)

-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

✓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신규**34억, 소통·의견수렴, 법률상담)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內 이중구조개선 신설(**신규**41억)

2 상생 · 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습니다.

○ (노·사) 원청 노사 출연 + 격차 완화에 활용 시 정부 매칭 지원

- ✓ 상생연대 형성지원(신규50억): [매칭] 사측 출연분 100%, 근로자·노조 출연분 200%
[활용]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

○ (원·하청) 원·하청이 안전보건 관련 상생협약 시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3> 99억 → <24> 118억

○ (대·중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개방 시 운영비 등 지원

- ✓ 대중소상생아카데미(신규122억): 대기업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지원, 중기근로자 공동 훈련 실시

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중소 안전역량) 원·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집중 지원

- ✓ 안전동행지원사업(4,025개소, 3,220억),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
- ✓ 산재예방시설용자: <23> 3,563억 → <24> 4,586억(+580개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23> 382억 → <24> 684억(1.6 → 2.7만개소(+10,500개소))
-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신규126억):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통해 50인미만 사업장 컨설팅 제공

○ (안전보건 인프라)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근로자건강센터 등),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포털 구축

- ✓ 근로자건강센터: <23> 208억 → <24> 221억(근로자건강센터 +1개소, 트라우마센터 +9개소)
- ✓ 산재예방 365포털 구축: <23> 5억 → <24> 124억

○ (산업재해보상)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추가, 건강손상자녀 산재(태아산재) 특례 등

- ✓ 특고 전속성 폐지(+472억),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468억), 태아산재특례(+20억)

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합니다.

- **(지역 연계 매칭)**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확대

- ✓ 지역형플러스: <23> 356억 → <24> 667억(조선, 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
- ✓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24> 145억(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

- **(청년 매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

-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신규 499억):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차 100만원 지원(청년 2.5만명)

- **(외국인력 활용)** 도입 규모 확대('24. 16.5만명) 및 중앙·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해 상담·훈련·생활지원 등 체류 관리 강화

- ✓ 고용부(27억, 지방관서·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 훈련 제공,
-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신규 18억)

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핵심인력 양성)**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등 저성과 훈련 폐지→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확대

- ✓ K-Digital Training: <23> 4,163억 → <24> 4,732억(+74백명)
- ✓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15개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5개소)
-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반도체 10개 신설, AI+X·저탄소 각 5개 신설, AI소프트웨어 등 15개 개편)
- ✓ 폴리텍 신산업분야 비학위과정(하이테크과정) 확대(23. 66개 → 24. 90개)

- **(현장훈련 강화)**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23> 134억, 1,920개소 → <24>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채용예정자훈련): <23> 1,479억 → <24> 2,134억(채용예정자 +600억)

- **(돌봄 분야 신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 신설**

✓ 돌봄 서비스 훈련(신규350억): 총 10만명(요양보호사, 아이돌봄), 先부담 환급제도 도입

- **(일학습병행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일학습병행제 도입**, 제조·뿌리산업 중심 신속 연계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신설(신규124억, 1천명)

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합니다.

-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 국민취업지원제도: <23> 1조 2,255억 → <24> 9,425억
 ↳ <23> 1유형 40만, 2유형 7만, 일경험 1.7만 → <24> 1유형 24.8만, 2유형 6만, 일경험 1.5만
 ✓ 구직급여제도: <23> 11조 1,839억 → <24> 10조 9,144억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3> 1조 764억 → <24> 8,375억

-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원스톱+맞춤형) 제공

✓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24> 72억(2개소 신축, 기존 4개소 운영 비용 등)

3. 노동시장 참여 촉진

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일경험 확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

✓ 청년일경험지원: <23> 553억 → <24> 1,718억
↳ ▲일경험 지원 확대(2.6→4.8만명),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 신설 ▲통합플랫폼 구축 등

- **(자격시험 지원)**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 242억):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제공

- **(맞춤형 지원)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 확대,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23> 407억 → <24> 831억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 62억)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304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20개)
✓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23> 75억, 55개 → <24> 118억, 75개

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 **(청년 니트)**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전담 인프라 등 마련(참여의욕 고취, 취업지원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23> 408억 → <24> 709억(+301억)
↳ ▲청년도전지원(+20억, 9천명) ▲신규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 지자체 연계 니트 사전예방·발굴 등)

○ **(해외진출 청년) K-Move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신설**

✓ K-Move: <23> 201억→<24> 324억(▲지원 확대(+1천명)▲**신규** 연수장려금(최대100만원)신설(+28억))

○ **(다문화 청년) 다문화 청년의 사회진출 및 경제적·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 신설**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24> **신규** 22억(200명)

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맞돌봄 급여 상향)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원(3+3 → 6+6)**

✓ 개편사항: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200~4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6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23> 1조 6,964억 → <24> 1조 9,869억,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

✓ 개편사항: (자녀연령) 8세, 초등학교 2학년 →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4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6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급여지원)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 937억→<24> 1,490억(+553억),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해 급여지원제도 신설**

✓ 개편사항: (기간)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급여 신설) 최초 2일 급여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난임치료휴가급여: <24> 37억(신설, 22,997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합니다.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등 고용촉진 강화, 표준사업장·디지털 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확대

- ✓ 중증장애인출퇴근비용지원(월 7만원(+2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 +302억)
- ✓ 장애인취성패 확대(13천명, +2천명)·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 근로지원인(11천명, +5백명), 중증장애인 인턴(1천명, +3백명)
-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72개소, +25개소), 보조공학기기(15천점, +1천점)
- ✓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4개소), 발달훈련센터 가상훈련시스템 구축(+5개소)

-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2→3년) 및 맞춤형 취업지원 인프라인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 중장년내일센터 확충(+3개소), 고령자고용지원금(2.5만명)

- **(유연근로 활성화)** 재택·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 ✓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24억),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 단가 상향(+5억, 단가 +10만원)
-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20억)

- **(장시간 근로개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시에도 月 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통합·고도화

- ✓ 고용안정장려금(위라벨일자리장려금): <23> 296억 → <24> 339억(+43억)
- ✓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24> 440억, 사업별로 산재한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 통합·고도화

Ⅲ.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

- ◇ 총지출 33조 6,825억원('23년 대비 △12,680억원, △3.6%)
- 회계는 5조 8,151억원('23년 대비 △8,590억원, △12.9%)
 - 기금은 27조 8,674억원('23년 대비 △4,090억원, △1.4%)

1. 예산

1) 세입 및 세출 총괄

□ 세 입

- 수입은 3,423억원으로 '23년 대비 918억원(36.7%) 증액

(단위: 백만원)

내역별	'23예산 (A)	'24예산 (B)	증감(B-A)	%
합 계	250,447	342,259	91,812	36.7
○ 일반회계	233,946	323,517	89,571	38.3
· 기타재산수입 및 이자수입	1,217	1,866	649	53.3
· 과태료	43,503	47,482	3,979	9.1
· 징계부과금	91	191	100	109.9
· 과징금	1,072	2,275	1,203	112.2
· 위약금 및 가산금	274	27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87,640	271,279	83,639	44.6
· 면허료및수수료	10	11	1	10.0
· 기타잡수입	139	139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501	18,742	2,241	13.6
· 기타경상이전수입	15,386	17,122	1,736	11.3
·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1,115	1,620	505	45.3

□ 세 출

- 지출은 5조 7,685억원으로 '23년 대비 9,056억원(△13.6%) 감액

(단위: 백만원)

회계별	'23예산 (A)	'24예산 (B)	증감(B-A)	%
합 계	6,674,114	5,768,506	△ 905,608	△ 13.6
● 일반회계	5,919,305	5,088,266	△ 831,039	△ 14.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132	90,426	1,294	1.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0,248	178,757	△ 121,491	△ 40.5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65,429	411,057	45,628	12.5

2) 주요 사업별 예산

1] 노동시장정책 지원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지역일자리진단 시스템 운영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 ❖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41억원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주요 일자리정책 추진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지역일자리맵) 운영

○ 고용영향평가사업: 10억원

-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 실시, 재정사업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고용영향 평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3억원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
- 신성장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 지원, 상생협약 지원 업종 확산 및 지역 주도 이중구조개선 등 지원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2년 종료): 23억원

- 사후 정산 추가지급 및 과오지급금 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최소 예산 편성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61,156	113,653	△47,503	△29.5
○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4,297	4,053	△244	△5.6
○ 고용영향평가사업	3,371	1,039	△2,332	△69.2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47,504	106,292	△41,212	△27.9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5,984	2,269	△3,715	△62.1

2 고용서비스 사업

- ❖ 맞춤형·종합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안전망 내실화 및 취업지원 강화

○ 고용센터인력지원: 946억원

-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상담인력인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 지원

* 공무원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 직업상담원 200명*3개월

○ 직업안정기관운영: 532억원

- 취업지원,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운영비 및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제반비용

*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 확대(72억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19억원) 등

○ 취약계층취업촉진: 62억원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375억원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8,362억원)

* 지원대상: ('23년)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24년) 270만원 미만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기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등(13억원)

○ 실업크레딧지원: 339억원

- 일정 소득* 이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국민취업지원제도: 9,425억원

- 저소득 구직자 등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활안정 지원 (Ⅰ·Ⅱ 유형, 8,665억)

* 지원규모: ('23년) 47만명 → ('24년) 30.8만명(△16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일경험프로그램, 760억)

* 지원규모: ('23년) 1.7만명 → ('24년) 1.5만명(△0.2만명)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2,511,966	1,967,932	△202,278	△8.1
○ 고용센터인력지원	92,288	94,640	2,352	2.5
○ 직업안정기관운영	71,425	53,166	△18,259	△25.6
○ 취약계층취업촉진	11,654	6,185	△5,469	△46.9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76,405	837,516	△238,889	△22.2
○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4,739	33,910	△829	△2.4
○ 국민취업지원제도	1,225,455	942,515	△282,940	△23.1

③ 고용지원 사업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고용24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 노동시장 현황 및 고용노동현안 이슈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고용 정책 수립 지원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82억원

- 각 고용전산망과 외부기관에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MDB 구축·운영, AI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시스템 및 생애경력단계별 일자리·노동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잡케어서비스 운영·관리 등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20억원),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6억원),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14억원), ▲일반운영비(42억원)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인프라 지원(정보화): 57억원

-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통합채널(고용24)을 구축하고, 내부 직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유지관리 지원

* ▲고용24 운영 및 유지관리(16억원),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14억원), ▲일반운영비(27억원)

○ 고용노동통계조사: 262억원

-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종(부가조사 2종, 가공통계 1종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각종 정책 기초 자료로 제공

*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188억원), ▲기타 운영비 등(73억원)

○ 고용동향조사분석: 70억원

- 대상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등 고용패널 자료 생산, 고용동향 심층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54억원)
- 빅데이터 생산 분석 및 빅데이터센터 운영(10억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연구(6억원)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414억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511명, 352억원) 및 기관운영비(62억원)를 지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완공('23년말)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공공요금 등 제반비용 반영(20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03,258	88,527	△ 14,731	△ 14.3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7,853	8,216	363	4.6
○ 디지털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지원(정보화)	5,218	5,714	496	9.5
○ 고용동향조사분석	5,939	7,026	1,087	18.3
○ 고용노동통계조사	25,599	26,164	565	2.2
○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39,241	41,407	2,166	5.5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7,589	-	△ 7,589	순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11,819	-	△ 11,819	순감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은 '24년부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반영(13억원)

4 청년고용 사업

- ❖ 대학 등을 활용한 청년친화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운영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한 민관협업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지원
- ❖ 구직단념 예방·발굴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취업애로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장려금 등 지원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831억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및 고등학생에게 각종 노동시장 정보 및 경력설계·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0개소, 377억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50개소, 389억원),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20개소, 62억원)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청년의견 반영 추진
 - * 2030 자문단 운영 (0.7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7억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24년 신규 지원 12.5만명)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 지원('24년 신설, 499억원)
 - * 빈일자리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각 지급(청년 248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1,628억원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지원,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24년부터 기가입자만 지원)

○ 한국잡월드운영: 230억원

- 한국잡월드 운영(출연금 225억, 총지출 361억원 - 자체수입 136억원)
 - * (사업비) 289억원(전시체험콘텐츠 46억, 전시체험관 195억, 숙련기술체험관 36억, 정보화시스템 6억, 기타 6억), 기타 운영 73억 등
-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지원(설계비 5억원)

○ **해외취업지원: 575억원**

- 해외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실시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취업 연계
 - * K-Move 스쿨: ('23년) 2,100명 → ('24년) 3,100명(연수장려금 신설)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3년) 3,800명 → ('24년) 3,900명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2,441억원**

-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인 청년층에 대한 진로지도, 일경험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청년 취업경쟁력 제고
 - * 청년일경험지원 48,000명,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청년도전지원사업 9,000명 등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54억원**

- (직업정보제공) 미래직업세계 연구를 통한 신직업 발굴 및 육성, 심층적인 직업정보(한국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등) 개발·보급
- (직업지도) 전국민의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분석 등 청년정책 실행지원
 - * 직업정보제공 10.3억원, 직업지도 43.5억원

○ **공정채용문화확산: 56억원**

-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38억원,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 18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559,822	1,239,316	△ 320,506	△ 20.5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40,667	83,147	42,480	104.5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889,078	657,680	△ 231,398	△ 26.0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29,586	162,808	△ 266,778	△ 62.1
○ 한국잡월드운영	21,330	23,019	1,689	7.9
○ 해외취업지원	46,786	57,540	10,754	23.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26,293	244,113	117,820	93.3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6,082	5,378	△ 704	△ 11.6
○ 공정채용문화확산	-	5,631	5,631	순증

⑤ 여성·장년 및 사회적기업 사업

- ❖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 대상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및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자생력 강화 촉진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8억원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운영, 고용평등상담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7억원(총 지원인원 11,784명)

- 임신·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지원인원: ('23) 10,368명 → ('24) 11,784명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17억원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127억원(지원인원 1,500명)

- 신중년이 퇴직 이후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에서 경험 후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장년층취업지원: 201억원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생애설계교육, 전직지원,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9,560명,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400개소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일반): 330억원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추구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477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 일정 비율 지원(일자리창출사업 6,388명)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24억원

- 제주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 일정비율 지원(일자리창출사업 317명)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255,632	146,865	△108,767	△42.5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1,790	△690	△27.8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572	17,676	2,104	13.5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030	11,668	△362	△3.0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5,696	12,654	△13,042	△50.8
○ 중장년층 취업지원	22,281	20,052	△2,229	△10.0
○ 사회적기업 지원(일반)	69,259	32,990	△36,269	△52.4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103,377	47,665	△55,712	△53.9
○ 사회적기업육성(제주)	4,937	2,370	△2,567	△52.0

⑥ 직업능력개발 사업

- ❖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 첨단산업 학과 신설·개편 추진
- ❖ 청년 및 약자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확대
-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 NCS·SQF 개발 등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숙련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억원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①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② 노인돌봄, 보육 등 돌봄서비스 훈련 ③ 일반고 3학년생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④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 등
- * ①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4.4만명)
②돌봄서비스 훈련(10만명, 신규), ③일반고(5,600명, △1,200명)
④K-디지털 기초역량훈련(8.3만명)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18억원

- 직업계고(직업교육, 75개 학과)와 신산업분야 민간훈련기관(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과정 운영지원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84억원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등 훈련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효과성 제고
- * 훈련기관평가(28억원), 훈련과정심사(35억원), 훈련과정평가(21억원),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14억원), 직업훈련 모니터링(9억)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845억원

- 청년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자격검정 사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비용 지원
- * 자격검정사업(1,330억원), 외국인고용관리사업(256억원), HRD확산(18억원), 국제 교류 협력사업(5억원), 경상운영비(1,369억원) 및 자체수입(△1,134억원)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25억원

- ① NCS·SQF 구축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② 직무 능력은행제 운영으로 전 국민의 생애경력 통합 관리·활용 지원
- * NCS 개발(6직무) 및 개선(105직무), SQF 개발(10개분야) 및 활용(6개분야) 등
- H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숙련기술장려사업: 401억원**

- 최고의 숙련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 * 국내기능경기대회 114억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58억원,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 10억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1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지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3,179억원**

- 학위과정 훈련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시설확충 등 한국폴리텍대학 운영비용 지원
- * 인력개발사업(1,057억원), 시설확충사업(462억원), 정보전산화사업비(39억원), 경상운영비(2,006억원) 및 자체수입(△386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69억원**

- BTL 사업 정부지급금
- * 27개 캠퍼스 임차료 252억원, 운영비 117억원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751억원**

- 우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실천공학기술자 등 직업능력개발 전문가의 안정적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
- * 직업훈련교원및HRD담당자양성(228억원), 직업훈련교원재·향상연수(236억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287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27억원**

- 기관운영비,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비용 지원
- * 교육환경 인프라구축 등(131억원), 대학정보화사업(14억원), 연구학생지원비(27억원), 기관운영비(491억원) 및 자체수입(△211억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36억원**

- 기숙사 및 공학관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
- * 임차료(25억원) 및 운영비(11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207,502	1,343,493	135,991	11.3
○ 내일배움카드(일반)	518,815	584,906	661	12.7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7,503	11,823	4,320	57.6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289	-	△289	순감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19,469	18,394	△1,075	△5.5
○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25,787	12,502	△13,285	△51.5
○ 숙련기술장려사업	29,153	40,057	10,904	37.4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55,099	184,482	29,383	18.9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732	5,134	△598	△10.4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80,226	75,138	△5,088	△6.3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278,661	317,873	39,212	14.1
○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3,565	36,873	3,308	9.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0,035	52,718	2,683	5.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168	3,593	425	13.4

7] 노사상생협력 사업

❖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연대 및 협력 등 촉진

○ 상생협력 확산지원: 210억원

- (상생임금 확산지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 지원

-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임금·직무정보 제공(10억원),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직무 정보 인프라 확충(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60억원)

- (상생연대 형성지원) 원하청 간 상생연대 및 협력 등 지원

- * 원청 노사가 조성한 재원에 대한 매칭 지원(49억), 운영비(1억)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문화 유공 포상 및 노사협력 촉진 등 지원

-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기반 구축(5억원), 지역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2억원), 체계적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3억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인식 확산 구축(0.8억원), 공공노사관계 경쟁력 강화(0.35억원),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5억원), 회계 투명성 강화 지원(4.5억원), 지역노사 민정상생협력 지원(12억)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공론장 형성,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운영(8.8억), 지역별 타운홀 미팅 및 토론회, FGI(9.5억),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소통체계 구축·운영(0.8억),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15억)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0	21,010	21,010	순증
○ 상생협력 확산지원	0	21,010	21,010	순증

8 노사정책 사업

❖ 노사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안착 지원: 440억원

- (일터혁신 지원)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조건 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지원: ('23년) 3,100건 목표 → ('24년) 3,550건 목표

↳ 전문컨설팅 분야 :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 개선 ⑤평가체계 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⑧장년고용안정지원

- (직무기반 인사체계 구축 특화지원) 산업구조와 직무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NCS·SQF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7억원

- 노사관계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노사관계 문제해결 능력 제고

○ 노사발전재단지원: 201억원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사관계 교육, 차별개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지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79,268	83,222	3,954	5.0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안착 지원	36,974	43,984	7,010	19.0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153	19,654	501	2.6
○ 노사발전재단 지원	23,141	20,144	△2,997	△13.0

9 근로조건 보호

-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 지원, 장시간 근로·고용차별 개선 등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을 추진

○ 근로조건개선지원: 119억원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청산지원 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과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지원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 인식개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안내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상호존중의 직장 문화 정착

○ 근로감독역량강화: 130억원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개선, 근로감독 과학화 및 인프라 강화와 함께 노동사범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 근로감독관의 근로권익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34억원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정규직 채용·전환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파견법 준수 등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 실시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을 위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노무제공자 정책 자문기구(구 고용형태 자문기구), 실태조사·연구 등 실시

* 일터개선 지원금: 민간기업 640백만원, 자치단체 1,040백만원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실시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4억원

- 퇴직연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32,723	28,592	△4,131	12.6
○ 근로조건개선지원	16,675	11,896	△4,779	△28.7
○ 근로감독역량강화	11,175	12,980	1,805	16.2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4,288	3,358	△930	△21.7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585	358	△227	△38.8

10 산업재해예방사업

- ❖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지식 함양 및 수사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증거분석 등 수사의 과학화** 추진 및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수사 여건의 개선**을 지원
-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23억원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기업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지식 함양,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지원
 -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비 2.9억원, 산업안전감독관 교육여비 1.1억원 등 4.1억원
- **(중대재해수사의 과학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사가 요구되어,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
 - *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유지보수 9.42억원, 분석팀 역량강화 0.44억원 등 9.9억원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현장 출동·수사를 가능케하는 수사 지원차량 제작, 녹취록 등 증거확보 활동 지원으로 중대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현장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 * 수사지원차량 구매 및 운영 2.9억원, 증거확보 활동 지원 0.9억원, 현장 점검의 날 및 수사 출장여비 5억원 등 8.8억원

○ **진폐위로금: 868억원**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위로금(재해·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

* 진폐예방법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상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평균임금×장해등급별 위로금 일수^(1급)1040일~^(13급)215일]

○ **진폐건강진단: 15억원**

- 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자건강진단(1차) 및 정밀진단(2차)을 실시하고 진폐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 **진폐근로자지원: 12억원**

- 광업 종사 근로자의 진폐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건강진단비,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비)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진폐예방사업 추진경비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93,761	92,708	△1,053	△1.1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629	2,282	△2,347	△50.7
○ 진폐위로금 지급	86,415	87,688	1,273	1.5
○ 건강진단	1,510	1,510	-	-
○ 건강진단지원금	1,207	1,228	21	1.7

11 국제협력사업

-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FTA 협상 참여 및 주요 FTA 발효에 따른 이행체제 구축
-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교류협력 등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자립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 ILO 분담금: 의무 분담금 143억원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5억원

- 한·OECD 협력지원(0.7억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5억원), 고용노동 통상협상 대책추진 및 협상 참석(0.8억원), 한-EU 및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등(5.5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102억원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56.7억원),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2.9억원), 한·ILO 협력사업(42.1억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79억원

- 외국인취업자관리(42억원), 외국인력상담센터(19억원),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18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35,547	33,172	2,375	△ 6.7
○ ILO 분담금(ODA)	13,044	14,308	1,264	9.7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793	755	△ 38	△ 4.7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9,961	10,175	214	2.1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641	7,934	3,293	71.0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7,108	-	-	-

12 고용노동행정지원

- ❖ 본부, 지방관서 및 위원회 운영과 업무환경개선 등
- ❖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비용 지원

○ 정책연구개발: 4.2억원

-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사업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65억원

- 행정채신·생활공감정책 추진,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정책고객 소통강화,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청년인턴 운영 등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1억원

- 정보시스템(노사누리, 전자민원 등) 구축·운영, 전산장비 구매 등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138억원

- 본부 및 지방관서 유지보수·관리비, 청·관사 임차비용 등

○ 노동위원회 운영: 133억원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88억원), 청사관리(22억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11억원), 정보화 운영(12억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5억원

- 회의체 운영비(11억원), 사무처 운영 및 인건비(11억원), 청사관리(13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237억원

-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및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232억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5억원)

○ 제주도 이관업무 지원(지특회계): 173억원

- 사회적기업육성(24억원), 직업안정기관운영(10억원), 국민취업지원 제도(90억원), 내일배움카드(1억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14억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35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14,790	104,988	△ 9,802	△ 8.5
○ 정책연구개발	813	415	△ 398	△ 49.0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2,863	6,490	3,627	126.7
○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4,869	22,139	2,730	△ 11.0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2,582	2,227	△ 335	△ 13.7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15,063	14,170	△ 893	△ 5.9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7,528	8,849	1,321	17.5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1,125	1,050	△ 75	△ 6.7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1,453	1,187	△ 266	△ 18.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3,291	3,530	239	7.3
○ 일자리위원회운영	7,054	3,936	△ 3,118	△ 44.2
○ 고객상담센터운영	24,478	23,719	△ 759	△ 3.1
○ 자치단체 이관 사업 지원(지특)	23,671	17,276	△ 6,395	△ 27.0

13 정부 내부 거래

❖ 고용보험사업,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전출금

○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4,000억원

- 모성보호지원: 4,000억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 213억원

- 산재보험운영: 63억원

- 산재예방사업: 150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 0.82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0.82억원

< '24년도 예산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1,320,082	421,382	△ 898,700	△ 68.1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300,000	400,000	100,000	33.3
○ 고용보험기금 전출(청년 및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지원)	800,000	0	△ 800,000	순감
○ 고용보험기금 전출(실업급여제정 이자비용 등 한시지원)	200,000	0	△ 200,000	순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0	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사업)	13,700	15,000	1,300	9.5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 (임채기금 운영)	82	82	0	0.0

2. 고용보험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4년도 수입은 18조 8,245억원('23년 대비 4.7% 증가)

- 보험료 등 자체수입과 정부내부수입 증가

* 여유자금회수(4조 5,891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3조 4,136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총 계(A+B+C)	21,679,991	23,413,642	1,733,651	8.0
수입계(A+B)	17,983,195	18,824,532	841,337	4.7
□ 자체수입(A)	17,683,195	18,424,532	741,337	4.2
○ 고용보험료	17,043,109	17,748,202	705,093	4.1
○ 재산수입·융자회수 등	640,086	676,330	36,244	5.7
□ 정부내부수입(B)	300,000	400,000	100,000	33.3
○ 일반회계 전입금	300,000	400,000	100,000	33.3
○ 공자기금 예수금	-	-	-	-
□ 여유자금회수(C)	3,696,796	4,589,110	892,314	24.1

□ 지 출

○ '24년도 지출은 17조 5,700억원('23년 대비 2.8% 증가)

* 여유자금운용(5조 8,437억원)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3조 4,13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총 계(A+B+C)	21,679,991	23,413,642	1,733,651	8.0
지출계(A+B)	17,090,881	17,569,954	479,073	2.8
□ 지출(A)	16,910,684	16,405,832	△ 504,852	△ 3.0
○ 고용창출	898,314	326,609	△ 571,705	△ 63.6
○ 직업능력개발	1,754,335	1,628,382	△ 125,953	△ 7.2
○ 고용안전망확충	11,616,303	11,429,432	△ 186,871	△ 1.6
○ 고용평등증진	2,526,300	2,904,898	378,598	15.0
○ 고용노동행정지원	115,432	116,511	1,079	0.9
□ 정부내부지출(B)	180,197	1,164,122	983,925	546.0
□ 여유자금운용(C)	4,589,110	5,843,688	1,254,578	27.3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일자리 안전망 지원

- ❖ 실직시 생활안정을 도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등 지원
- ❖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10조 9,144억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①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② 지급

①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

②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

○ 조기재취업수당: 4,638억원

-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재취업 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175억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지급

○ 실업크레딧지원: 337억원

- 일정 소득^① 이하인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②를 지원

①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이하

② 일반회계 25%, 고보기금 25%(고용부), 국민연금기금 25%(복지부), 자부담 25%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1,616,303	11,429,432	△186,871	△1.6
○ 구직급여	11,183,948	10,914,396	△269,552	△2.4
○ 조기재취업수당	386,659	463,837	77,178	20.0
○ 자영업자 실업급여	11,222	17,541	6,319	56.3
○ 실업크레딧 지원	34,474	33,658	△816	△2.4

2 고용창출 지원

- ❖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
- ❖ 구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제공과 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483억원

- 취업취약계층·장년 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명)

구 분	'23년		'24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본예산)	지원 인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	30.3	139,504	11.5	48,277	
① 고용촉진장려금	13.8	64,771	7.8	37,494	○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23년) 13,802명 → ('24년) 7,811명
②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2.9	12,521	1	1,785	○ 근로시간단축, 교대제 개편 등으로 일자리 증가시 지원 -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잔여사업비 지원 * ('23년) 2,886명 → ('24년) 951명
③ 국내복귀기업지원	0.2	1,164	0.9	1,213	○ 국내복귀기업 일자리 증가시 지원 -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잔여사업비 지원 * ('23년) 216명 → ('24년) 879명
④신중년적합직무지원	4.5	20,001	1.8	6,972	○ 만50세 이상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 -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잔여사업비 지원 * ('23년) 4,546명 → ('24년) 1,862명
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8.9	40,050	-	-	○ 사업 종료
⑦ 고용장려금(용자)	-	-	-	1	○ 고용장려금(용자) 세부사업에서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사업 이관
⑧ 운영비	-	997	-	812	○ 운영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95억원

-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이전·증설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고용창출 활성화 지원

*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최대 1년간 지원('24년 지원인원: 1,761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신규신청 종료, 잔여사업비 반영): 171억원

-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시 1인당 年 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767억원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지원,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24년부터 기가입자만 지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595,095	151,512	△443,583	△74.5
○ 고용창출장려금	139,504	48,277	△91,227	△65.4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641	9,511	4,870	104.9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9,358	17,071	△212,287	△92.6
○ 청년내일채움공제	210,693	76,653	△134,040	△63.6
○ 고용장려금(융자)*	18	-	△18	순감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381	-	△381	순감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10,500	-	△10,500	순감

* 고용창출장려금 내역으로 이관

③ 고용유지·안정 지원

-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 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과 고용위기 사업장 등의 고용유지·안정 도모

○ 모성보호육아지원: 2조 4,968억원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을 방지하고, 직장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녀연령 및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개선 사항 신규 반영
 - * 출산전후휴가급여: ('23년) 71천명 → ('24년) 76천명
 - 육아휴직급여: ('23년) 132천명 → ('24년) 143천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년) 19천명 → ('24년) 37천명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3년) 19천명 → ('24년) 14천명
 - 난임치료휴가급여: ('24년) 23천명

○ 직장어린이집지원: 1,121억원

-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근로복지공단 위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24년) 37개소(전년수준)
 - 설치지원: ('23년) 75개소 → ('24년) 83개소(임차비지원 8개소 신규 반영)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24년) 725개소(전년수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4년) 134개소(전년수준)

○ 고용유지지원금: 714억원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휴업·휴직수당) 지원
 - * 유급휴업·휴직 지원 702억원, 무급휴업·휴직 지원 11억원

○ 고용안정장려금: 2,338억원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 장려금 등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인원 및 예산 내역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계획		비 고
	지원 인원	금액 (본예산)	지원 인원	금액	
고용안정장려금	60,379	199,518	74,686	233,836	
①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16,250	29,594	20,074	33,866	○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24년 실근로시간단축 신규 도입
② 정규직 전환 지원	4,040	12,307	1,360	4,000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으로 전환한 사업주 지원 - '23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잔여사업비 지원 * ('23년) 4,040명→('24년) 1,360명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0,935	22,164	6,409	15,332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 장려금 및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등 *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감소 반영 및 인프라·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확대
④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	29,154	135,453	46,843	180,638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 * '24년 모성보호제도 개편(확대) 반영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621억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
하고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인원: ('23년) 8천명 → ('24년) 11천명
-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인원: ('23년) 53천명 → ('24년) 25천명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2,723,674	2,976,270	252,596	9.3
○ 모성보호육아지원	2,100,641	2,496,830	396,189	18.9
○ 직장어린이집지원	111,195	112,130	935	0.8
○ 고용유지지원금	197,374	71,372	△126,002	△63.8
○ 고용안정장려금	199,518	233,836	34,318	17.2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86,942	62,102	△24,840	△28.6
○ 일터혁신지원*	28,004	-	△28,004	순감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일반회계)로 이관

4] 직업능력개발 지원

- ❖ 국가기간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및 신기술 분야 등 전략산업 직종 추가 발굴을 통한 적기 인력양성 지원
- ❖ 현장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지원으로 빈일자리 해소와 기업 핵심 인력 양성에 기여

○ 내일배움카드(고보): 7,342억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직종, 국가적·전략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집중 양성
 - * 훈련계획인원: ('23년) 70.6천명 → ('24년) 50천명
- (일반직종훈련) 실업자 및 재직자가 취·창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 훈련계획인원: ('23년) 388천명 → ('24년) 386천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재직자·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 참여 지원
 - * 훈련계획인원: ('24년) 20천명(전년수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568억원

- (일반훈련) 재직자·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지원
 - * 기업직업훈련카드: ('23년) 1.3만개소 → ('24년) 2.0만개소
 -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신규): ('24년) 100천명
 - 채용예정자훈련(신규): ('24년) 50천명
-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실시, 내부강사 육성, 훈련 관련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 훈련지원계획: ('23년) 1,920개소 → ('24년) 2,300개소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250억원**

- 대기업 등이 자체적인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여 대중소 상생 가치를 실현토록 지원

* 산업맞춤형: ('23년) 227개소 → ('24년) 200개소
하이테크형: ('23년) 60개소 → ('24년) 80개소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신설): ('24년) 100개 프로그램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3,116억원**

- 기업이 청년 등을 先 채용 후 맞춤형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통해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

*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24년) 7,000개소(전년수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3년) 217개소 → ('24년) 220개소
일학습병행 훈련비 지원: ('23년) 23천명 → ('24년) 25천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신규): ('24년) 외국인 유학생 1,000명

○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552억원**

- 하이테크 과정 확대*, 신산업분야 교육훈련 직종 개발 등 유망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 하이테크과정: ('23년) 1,530명 → ('24년) 2,030명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55억원**

-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로 생계비 대부

* 대부인원: ('23년) 10,000명 → ('24년) 8,500명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B)	'24계획(B)	증 감 (B-A)	
				%
계	1,754,335	1,628,382	△ 125,953	△ 7.2
○ 내일배움카드(고보)	887,312	734,204	△ 153,108	△ 17.3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03,030	356,828	53,798	17.8
○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지원	144,521	125,000	△ 19,521	△ 13.5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99,232	311,632	12,400	4.1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53,132	55,226	2,094	3.9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3,520	45,492	△ 8,028	△ 15.0
○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121	-	△ 11,121	순감
○ 외국인력고용지원**	2,467	-	△ 2,467	순감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내역으로 이관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일반회계)으로 이관

5 고용서비스 및 고용정책 기반 구축 지원

-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및 고용보험제도 운영
- ❖ 일자리·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 지원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8억원

-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및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58억원

- 보험료 부과자료 확보, 고용보험 등 제도안내 등을 위한 고객지원 센터 운영 및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변경(정정)·이직확인 등에 관한 관리업무 수행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9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7억원

- 고용보험 적용·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42억원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신고 포상금 지급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74억원

-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전산망 운영·관리 비용
- 고용전산망 보안관제센터 구축, 고용전산망 노후장비 보강 등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05,845	103,725	△ 2,120	△ 2.0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5,253	4,848	△ 405	△ 7.7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37,140	35,772	△ 1,368	△ 3.7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15,582	15,882	300	1.9
○ 고용보험적용부과 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678	5,657	△ 21	△ 0.4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3,567	4,185	618	17.3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1,517	37,381	5,864	18.6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108	-	△ 7,108	순감

6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 ❖ 적용·징수 업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 연구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

○ 기금운영비(고용보험 적용·징수 및 고용보험사업 운영 등): 1,165억원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880억원
 - * 근로복지공단 인건비(744억원),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133억원) 등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 240억원
 - * 고용보험기금 내 기금운영, 고용안정·창출사업, 모성보호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기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 고용보험연구개발: 40억원
- 자영업자 기금운영비: 5억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3.8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1.1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11,641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295,629	1,280,633	985,004	333.2
○ 기금운영비	115,432	116,511	1,079	0.9
○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	1,000,000	1,000,000	순증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80,197	164,122	△16,075	△8.9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4년도 수입은 10조 8,554억원('23년 대비 10.8% 증가)
 - 공자기금예탁금 회수(1조 5,501억원) 및 여유자금 회수(7조 8,895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0조 2,95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9,056,193	20,295,013	1,238,820	6.5
☐ 수입	9,795,610	10,855,440	1,059,830	10.8
○ 산재보험료	8,709,368	9,418,508	709,140	8.1
○ 이자·용자회수 등	1,066,242	1,415,632	349,390	32.8
○ 일반회계 전입금	20,000	21,300	1,300	6.5
☐ 여유자금 회수 등	9,260,583	9,439,573	178,990	1.9

☐ 지 출

- '24년도 지출은 9조 8,222억원('23년 대비 1.9% 증가)
 - 공자기금 예탁금(3조 3,000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7조 1,728억원)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0조 2,950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9,056,193	20,295,013	1,238,820	6.5
☐ 지출	9,640,569	9,822,242	181,673	1.9
○ 산재보험사업	8,015,070	8,099,762	84,692	1.1
○ 산재예방사업	1,198,698	1,285,544	86,846	7.2
○ 고용노동행정지원	426,801	436,936	10,135	2.4
☐ 여유자금 운용 등	9,415,624	10,472,771	1,057,147	11.2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산재보험사업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호에 기여
- ❖ 재활서비스 지원강화로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및 산재병원 인프라 확충 지원

<산재보험급여 7조 8,761억원>

○ 요양급여: 1조 5,406억원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 등 지급
* ('23년) 357,947명 → ('24년) 356,304명

○ 휴업급여: 2조 1,438억원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23년) 183,923명 → ('24년) 191,477명

○ 장해급여: 2조 6,464억원

-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14급 판정자에게 지급
* 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 일시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23년) 105,450명 → ('24년) 111,072명

○ 유족급여: 9,812억원

- 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23년) 35,820명 → ('24년) 37,107명

○ 간병급여: 486억원

-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상사: 전문 44,760원, 가족/기타 41,170원, 수사: 전문 29,840원, 가족/기타 27,450원
* ('23년) 4,936명 → ('24년) 4,673명

○ 상병보상연금: 1,296억원

- 2년 이상 요양중인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 제3급 해당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평균임금 329일분 ~ 257일분 지급

* ('23년) 3,336명 → ('24년) 3,221명

○ 장례비: 449억원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23년 최고 17,242천원, 최저 12,460천원

* ('23년) 3,039명 → ('24년) 2,961명

○ 직업재활급여: 268억원

- 요양종결 이후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1~12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받을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을 위해 지급

* ('23년) 4,048명 → ('24년) 4,089명

○ 진폐연금: 3,143억원

- 요양하거나 진폐장애 판정을 받은 진폐노동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진폐장애연금(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평균임금의 2일 ~ 11일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 진폐유족연금은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을 지급(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3년) 13,674명 → ('24년) 14,759명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 산재보험급여	7,792,317	7,876,091	83,774	1.1
○ 요양급여	1,718,504	1,540,630	△177,874	△10.4
○ 휴업급여	2,056,969	2,143,817	86,848	4.2
○ 장애급여	2,517,387	2,646,368	128,981	5.1
○ 유족급여	932,827	981,157	48,330	5.2
○ 간병급여	50,991	48,601	△2,390	△4.7
○ 상병보상연금	138,786	129,565	△9,221	△6.6
○ 장례비	42,827	44,937	2,110	4.9
○ 직업재활급여	27,307	26,760	△547	△2.0
○ 진폐연금	306,719	314,256	7,537	2.5

<산재근로자 재활 및 의료사업 지원>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84억원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85,934명, 602억원), 직장복귀 지원(27억원), 사회심리재활 지원(8,092명, 25억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435명, 4억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1,427명, 32억원) 등 전년수준
- 맞춤형서비스지원 90억원
 -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의 출퇴근재해보호지원 내 자문의사 수당 13억 수관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순증 5억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순감 1억원
 - * '21년 법령 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산재보험급여 내 직업재활급여와 통합 운영

○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지원: 127억원

- 재활공학연구소 46억원
 -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18억원, 재료비 28억원
- 직업환경연구원 48억원
 -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37억원, 노후연구장비 교체(10점) 11억원
- 케어센터 2개소 33억원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8억원

- 의료기관 평가(3억원), 산재보험 부정수급관리(12억원) 등 전년 동
-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및 인프라 구축 29억원
 - * 재해조사 인력 400명 장비 및 업무활동비 지원 등(8억원)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당 21억원(기금운영비에서 수관)
- 출퇴근 재해 보호지원 54억원
 -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의 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 자문의사 수당 13억 이관

○ 산재병원지원: 328억원

- 산재병원 운영지원 84억원
 - : 재활전문센터 39억원
 - 산재병원 본부 운영비 지원 45억원
- 산재병원 시설장비지원 55억원
 - : 노후안전시설개보수 17억원*, 의료장비현대화 38억원
 - * 동해병원 시설개선공사 설계비(6억원)
 - 태백병원 응급대기시설 철거공사비(11억원)
- 울산산재병원신축지원 157억원
 - * 5년차 공사비(131억원) 및 정보화 구축비(26억원)
- 구미 재활외래센터 건립 순증 30억원
- 전북권(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순증 2억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28,712	133,650	4,938	3.8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654	78,384	1,730	2.3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10,446	12,747	2,301	22.0
○ 요양관리	9,181	9,757	576	6.3
○ 산재병원지원	32,431	32,762	331	△1.0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및 지원>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8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징수위탁 지원 178억원
 - * 인건비(115억원), 사업비(59억원), 경비(3억원)
 - *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ISMP 컨설팅 용역 분담금(1억원)
-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308억원
 - : 사업장 안내 등 산재보험 고용정보부과(75억원), 콜센터 운영(77억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28억원)

보험사무대행지원 156억원

*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21억, 계속 소요(증 7억원) 등 반영
(플랫폼종사자 등 42만명 지원)

○ 산재보험시설 건립: 70억원

- 경인지역본부 재건축 62억원
* 4년차 공사비
- 자체청사 개보수 8억원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201억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18억원
- 스마트산재보상시스템 구축 순증 70억원
* '23년 ISP 완료
- 산재보험료율시스템 고도화(6억원), PDS 솔루션 도입(3억원),
산재보험전산망 재해복구센터 구축 ISP(3억원) 등 순증

○ 산재보험 위탁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2,618억원

- 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건비(2,139억원)
-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374억원)
-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 지원(92억원)
- 청사임차보증금 지원(13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B)	'24계획(B)	증 감	
			(B-A)	%
계	333,201	337,513	4,312	1.3
○ 산재보험료 징수관리	45,536	48,640	3,104	6.8
○ 산재보험시설 건립	17,714	7,023	△10,691	△60.4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4,542	20,059	5,517	37.9
○ 산재보험 위탁 운영경비	255,409	261,791	6,382	0.7

2 산업재해예방 사업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체계 구축 강화
-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직업건강 커버리지 확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지원 확대

<안전보건재정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718억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 957억원
 - * (제조·서비스) 2,832개소(242억원), (건설업) 8,900개소(715억원) 지원
-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노후·위험공정개선 지원 통해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격차 완화 및 산재예방 : 3,220억원
 - * (위험공정개선) 4,025개소 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의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 158억원
 - * (국소배기장치) 373개소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산재예방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치·설비를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장에 보급·확산 : 350억원
 - * (스마트 안전장비) 2,544개소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수행경비) 33억원
 - *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자료제작, 사업수행여비, 사업성과 평가용역 등 사업수행경비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506,974	471,792	△ 35,182	△ 6.9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506,974	471,792	△ 35,182	△ 6.9

<안전보건기술지원>

○ 업종별재해예방: 1,583억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122억원)
 -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108억원, 75→55천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9억원, 950→1,130개소) 등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9만회, 450억원)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26억원)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10억원, 3,600건), 안전보건종합진단(5억원, 150건) 등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985억원)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26억원, 28,000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118억원, 6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684억원, 26,500개소),
공동안전관리컨설팅 지원(126억원, 600명, 순증) 등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63억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32억원, 52,630건)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22억원, 6,295건)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2억원, 1,050건)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7억원, 33,700건)

○ 유해작업환경개선: 813억원

-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 개선지원(716억원)
 -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321억원, 8만8천개소),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20억원, 67만명),
직종별건강진단 및 근골예방 비용지원(68억원, 47,000명/4,600개소) 등
- 유해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4억원)
 - *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7억원, 5,000개소),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14억원, 12,000건) 등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63억원, 71,590회)

○ 근로자건강보호: 444억원

- 근로자건강센터(221억원)
 - * 건강센터 23→24개소, 분소 22개소, 트라우마센터 14→23개소
- 산업보건이슈 대응(34억원, 16,000개소)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29억원, 74건, 160개소)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35억원)
 -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평가(9억원),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운영(26억원)
-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11억원)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38억원)
 - * 심층진단(31억원, 2만명) 초고위험군 관리(7억원, 3,600명)
- 직업성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76억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억원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243백만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143백만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265,860	290,622	24,762	9.3
○ 업종별재해예방	131,530	158,255	26,725	20.3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7,859	6,318	△1,541	△19.6
○ 유해작업환경개선	82,176	81,276	△900	△1.1
○ 근로자건강보호	43,890	44,387	497	1.1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405	386	△19	△4.7

<안전보건문화확산>

○ 안전보건문화정착: 329억원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201억원)

* 안전보건교육(92억원, 611천명),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74억원, 11.5만명) 등

- 전문교육과정운영(43억원)

* 집합교육(34억원, 12,220명), 이러닝교육(7억원, 41,000명),
이러닝 교육 기능개선(2억원, 1식)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85억원)

* 안전문화사업(11억원), 홍보사업(59억원), 정책홍보(순증 15억원)

○ 산재예방시설 건립: 55억원

- 노후 안전체험교육장 시설 개선(중부교육장 4차년도 2억원, 감 90억원)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5차년도 52억원, 감 66억원)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순증 1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53,873	38,473	△ 15,400	△ 28.6
○ 안전보건문화정착	32,847	32,925	78	0.2
○ 산재예방시설건설	21,026	5,548	△ 15,478	△ 73.6

<안전보건기반조성>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80억원

- 안전보건연구사업(41억원)
 - * 안전경영정책연구(18과제, 14억원), 산업안전연구(5과제, 6억원),
직업건강연구(12과제, 11억원), 직업환경연구(4과제, 5억원),
화학물질연구(9과제, 3억원), 산업안전분야 국제 학술지 발간(1식, 3억원)
- 국제협력사업(9억원)
 - * 국제협력(7억원, 69회), 해외정보관리(2억원, 159회/종)
- 산업재해통계(30억원)
 - * 통계사업(8억원, 10식), 안전보건 환경 실태조사(순증 22억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80억원

- 안전보건정보시스템 운영(56억원)
-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순증 124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5,663	26,017	10,354	66.1
○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8,843	7,984	△859	△9.7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	6,820	18,033	11,213	164.4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679억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 1,511억원(증 39억원)
 - * (증원인건비) '23년 정기(2명, 61백만원), '24년 정기(2명 131백만원)
 - * (공통처우개선분) 3,683백만원(2.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경비 : 159억원(증 5억원)
 - * 임차료 및 관리비(증 82백만원), 전북서부지사 이전소요(증 86백만원), 평택지사 신설비용(증 5억원), 경상경비 공통절감분(감 3억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 9억원(증 2억원)
 - * 청사이전 및 재계약(증 1억), 평택지사 신설비용(증 2억), 경상경비 공통절감분(감 1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63,297	167,879	4,582	2.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비	163,297	167,879	4,582	2.8

③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용자

- ❖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도모
- ❖ 유해위험설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143억원

-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대부
 - *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2,000만원 한도, 연리 1.25%, 지원대상 1,511명
 - * 물량: ('23년) 1,696명 → ('24년) 1,511명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 산재근로자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임대 지원
 - * '19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및 '24년 계약만료로 지원대상 없음(순감)

○ 산재예방시설용자: 4,586억원

-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설비·기계기구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용자 지원
 - *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2,020→2,600개소)
 -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1.5%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372,072	472,939	100,867	27.1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창업점포지원 통합편성)	15,744	14,299	△1,445	△9.2
○ 산재예방시설용자	356,328	458,640	102,312	28.7

4 산재보험및예방사업 운영비

- ❖ 기금관리비 및 산재보험·산재예방제도 운영 지원
- ❖ 산재보험 및 예방제도 관련 연구용역

○ 인건비: 28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산업안전정책 전문위원 인건비
 - * 처우개선 2.5%, 고용부담금 부족분 반영

○ 기타경비: 39억원

- 산재보험기금운용,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본운영경비 등
 - * '21년 기금운용 평가결과(탁월)에 따른 인센티브 1억원(1년 한시) 반영

○ 산재보험 및 예방 연구개발: 5.7억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용역비 등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8,095	7,266	△829	△10.2
○ 기금관리비 인건비	136	144	8	5.9
○ 산재보험운영 인건비	762	181	△581	△76.2
○ 산재예방운영 인건비	2,325	2,457	132	5.7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381	363	△18	△4.7
○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	1,042	899	△143	△13.7
○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2,849	2,652	△197	△6.9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600	570	△30	△5.0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4년도 순수입은 9,031억원('23년도 대비 14.1% 증가)
- 여유자금회수 등을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2조 48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900,474	2,004,757	104,283	5.5
☐ 순수입	791,186	903,078	111,892	14.1
○ 자체수입	779,186	885,188	106,002	13.6
- 법정부담금	747,106	843,687	96,581	12.9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6,165	20,449	4,284	26.5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5,915	21,052	5,137	32.3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12,000	17,890	5,890	49.1
☐ 여유자금 회수 등	1,109,288	1,101,679	△7,609	△0.7

☐ 지 출

- '24년도 총지출은 9,053억원('23년도 대비 6.8% 증가)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994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감	
			(B-A)	%
계	1,900,474	2,004,757	104,283	5.5
☐ 총지출	847,783	905,348	57,565	6.8
○ 경상사업비	766,464	821,270	54,806	7.2
- 장애인고용장려금	297,747	323,371	25,624	8.6
- 장애인고용 및 취업지원	300,497	317,027	16,530	5.5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등	168,220	180,872	12,652	7.5
○ 기금운영비	81,319	84,078	2,759	3.4
☐ 정부내부지출	600,000	600,000	-	-
☐ 여유자금운용	452,691	499,409	46,718	10.3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3,234억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3.1%(민간부문) ~ 3.6%(공공부문)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90만원 장려금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23년) 611천명, 2,816억원, → ('24년) 633천명, 3,119억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장애인 신규 고용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3년) 34,320명, 161억원 → ('24년) 21,804명, 115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480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0.5천명→11천명, +5백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지원 강화

* 근로지원인: ('23년) 10,500명, 2,270억원 → ('24년) 11,000명, 2,425억원

- 중증장애인의 직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작업지도원 등을 선임·배치하는 경우 월 1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24년 4억원)

-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차 등 지원('24년 35억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노무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근로지원센터 운영('24년 17억원, 6개소)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6억원**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퇴근비용 지원(최대 월 7만원)

* ('23년) 15,440명, 월 5만원, 69억원 → ('24년) 11,000명, 월 7만원, 66억원

↳ 서울, 경북 등 지자체 교통비 지원사업 확산 추세로 적정 목표 조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9억원**

-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 ('23년) 147개소, 449억원 → ('24년) 172개소, 529억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196억원**

-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확대

* ('23년) 1.4만점 192억원 → ('24년) 1.5만점 196억원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6억원**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등 융자('24년 90억원 융자 규모, 이차보전금리 5.0%)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602,128	651,090	48,962	8.1
○ 장애인고용장려금	297,747	323,371	25,624	8.6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32,998	248,006	15,008	6.4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948	6,597	△351	△5.1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4,883	52,883	8,000	17.8
○ 보조공학기기지원	19,248	19,603	355	1.8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304	630	326	107.2

② 맞춤형 장애인 취업지원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취업지원: 340억원

- 국가 및 지자체 연계고용 감면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고용부담금 시스템 개선하여 연계고용 제도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유도

* ('24년) 시스템 고도화 6억원(신규)

- 중증·장년 장애인 인턴 경험 및 정규직 전환지원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 확대

* (대상) 1,000명(+300명), (지원) 인턴지원금(월 100만원, 6개월)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월 80만원, 6개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체계적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7천명)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47억원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23년) 11,000명 210억원 → ('24년) 13,000명 247억원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7억원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지원

* (대상) 800명, (지원) 고용전환사업주지원금(월 9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등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60,551	62,424	1,873	3.1
○ 장애인취업지원	33,488	34,011	523	1.6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1,018	24,701	3,683	17.5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취업지원	2,301	-	종료	종료
○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전환지원	3,744	3,712	△32	△0.9

③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 지원 등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공공·민간훈련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연구·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86억원

- 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양성훈련 등 훈련과정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총사업비 1,178억원, '24년 준공 예정)
 - * '24년 197억원(공사비 188억원, 시설부대경비 9억원)
- 기업의 훈련수요에 대응한 디지털맞춤훈련센터 운영(6개소) 및 확대(4개소*)
 - * 디지털훈련센터 신설 1개소, 전환 2개소, 부설 1개소
- 다양한 직무체험·훈련을 위한 가상훈련시스템 구축하여 발달 장애인 직업 적응 능력 제고('24년 15개소)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64억원) 및 공공훈련(3억원) 지원 및 시각 장애인 대상 정보화기기 지원('24년 14개소)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억원

- 장애인 기능경기(지방·전국, 발달) 개최 지원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금 지급(104명)

○ 장애인고용연구: 38억원

- 장애인고용연구(20과제) 및 장애인고용통계조사(4종)* 실시 등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8억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의무 이행 지원('24년 12,000개소)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신모델 제시를 위한 장애인 체육팀 운영('24년 5억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98,970	102,703	3,733	3.8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1,906	88,585	6,679	8.2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705	4,510	△3,195	△41.5
○ 장애인고용연구	4,544	3,844	△700	△15.4
○ 장애인인식개선지원	4,815	5,764	949	19.7

④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및 기금관리 운용 지원

○ 장애인고용정보화 지원: 51억원

- 장애인고용전산망 및 전산장비 등의 관리·운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망분리 구축(3차)(24년 9억원)

○ 기금관리 운용 지원: 841억원

- 공단 인건비 및 장애인기금 사업운영비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86,134	89,131	2,997	3.5
○ 장애인고용정보화	4,815	5,053	238	4.9
○ 기금관리(인건비·운영비)	81,319	84,078	2,759	3.4

5.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4년도 순수입은 6,913억원('23년 보다 5.9% 증가)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9,728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총 계	916,927	972,809	55,882	6.1
☐ 순수입	653,115	691,342	38,227	5.9
○ 사업주부담금	405,304	421,920	16,616	4.1
○ 변제금·이자·공탁금 회수 등	247,729	269,340	21,611	8.7
○ 일반회계전입금	82	82	0	0.0
☐ 여유자금 회수	263,812	281,467	17,655	6.7

☐ 지 출

- '24년도 총지출은 5,431억원('23년 보다 14.6% 감소)
- 여유자금 운용 등 규모는 4,297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총 계	916,927	972,809	55,882	6.1
☐ 총지출	635,650	543,133	△92,517	△14.6
○ 대지급금 지급	559,155	474,733	△84,422	△15.1
○ 무료법률구조지원	10,386	11,509	1,123	10.8
○ 대지급금 조력지원	52	0	△52	△100.0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48,333	40,190	△8,143	△16.8
○ 임채기금 운영비	17,724	16,701	△1,023	△5.8
☐ 여유자금 운용 등	281,277	429,676	148,399	52.8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 ❖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 ❖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체불청산 용자 지원**, 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4,747억원

-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개편 및 체불임금 감소 추세로 도산 대지급금 감소세 지속 예상 반영

* ('23년) 580억원(7,075명) → ('24년) 322억원(4,349명)

-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 감소 추세로 간이대지급금 감소 예상 반영

* ('23년) 5,012억원(96,841명) → ('24년) 4,404억원(83,962명)

- **(채권관리비용)**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을 대지급금 지급 추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사업비로 이관하여 전년 대비 순증

* ('23년) 0억원 → ('24년) 22억원

○ 무료법률 구조지원: 115억원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3년) 34,078건 → ('24년) 35,407건

↳ 간이대지급금 절차간소화에 따른 감소, 2022년도 사건수에 체불근로자 감소율 반영

-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임금채불관련 소송(민사,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 변호사 비용: 168,285원(건당) + 소송비용: 156,772원(건당) = 325,057원(단가 합계)

○ 체불청산 지원 용자(용자): 402억원

-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강화 등을 위한 용자 지원

- * ('23년) 총 7,970명(사업주 5,499명, 근로자 2,471명) → ('24년) 총 5,808명(사업주 3,276명, 근로자 2,532명)
- * 용자금액: 사업주(총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근로자(1천만원)
- ↳ 이자율: 사업주(2.2~3.7%), 근로자(1.5%)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617,926	526,432	△ 91,494	△ 14.8
○ 대지급금 지급	559,155	474,733	△ 84,422	△ 15.1
○ 무료법률구조 지원	10,386	11,509	1,123	10.8
○ 대지급금조력지원	52	0	△ 52	△ 100.0
○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	48,333	40,190	△ 8,143	△ 16.8

②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비

❖ 기금관리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지원

○ 인건비: 141억원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인건비

○ 기타경비: 26억원

-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경비,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기타경비 및 정보화 경비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중 감	
			(B-A)	%
계	17,724	16,701	△1,023	△5.8
○ 기금관리비(인건비)	98	102	4	4.1
○ 사업운영비(제도운영인건비)	758	802	44	5.8
○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12,881	13,228	347	2.7
○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4	14	0	0.0
○ 사업운영비(제도운영기타경비)	344	329	△15	△4.4
○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3,288	1,885	△1,403	△42.7
○ 임금채권정보화(정보화경비)	341	341	0	0.0

6.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 및 지출 총괄

☐ 수 입

- '24년도 순수입은 **3,673억원**('23년 대비 36.8%)
 - 여유자금 회수를 포함한 총 운용규모는 5,011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감 (B-A)	
				%
합 계	412,089	501,073	88,984	21.6
☐ 순수입	268,471	367,292	98,821	36.8
○ 융자금 회수	154,618	185,360	30,742	19.9
○ 재산수입	5,981	6,944	963	16.1
○ 경상이전수입 및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8,756	24,123	5,367	28.6
○ 정부내부수입	89,116	150,865	61,749	69.3
☐ 여유자금 회수	143,618	133,781	△ 9,837	△ 6.8

☐ 지 출

- '24년도 총지출은 **1,908억원** ('23년 대비 △21.1%)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152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감 (B-A)	
				%
계	412,089	501,073	88,984	21.6
☐ 총지출	241,739	190,822	△ 50,917	△ 21.1
○ 사업비	221,220	174,442	△ 46,778	△ 21.1
○ 기금운영비	20,519	16,380	△ 4,139	△ 20.2
☐ 정부내부지출	73,922	95,066	21,144	28.6
○ 공자기금 예탁	50,000	50,000	-	-
○ 계정간 전출	23,716	35,352	11,636	49.1
○ 복권기금 반환	206	9,714	9,508	4,615.5
☐ 여유자금운용 등	96,428	215,185	118,757	123.2
○ 여유자금 운용	96,428	215,185	118,757	123.2

2) 주요 사업별 계획

① 근로자 복지사업

- ❖ 저소득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하고 근로의욕 고취
- ❖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노후소득 보장 강화
- ❖ 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

○ 근로자복지지원: 19억원

- 문화예술제(4억원): 4개 분야(미술·음악·연극·미술) 예술제 개최
- 기업복지활성화지원(12억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제공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3억원): '18년 사업 종료 후 춘천아파트 매각 부지 주거시설 환경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

○ 퇴직연금 사업운영: 223억원

- 계약형퇴직연금제도 운영(18억원) :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DC제도)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202억원) : 중소영세사업장이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하고 사업주·근로자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주 재정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연금연구센터(3억원):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근로복지기금 지원: 233억원

- 대기업(원청)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사업 수행 시 재정지원

○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59억원

-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근로복지 및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최적화된 정보서비스 지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885억원

-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23년) 26,554명 → ('24년) 16,316명

○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24억원

-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생계안정 기여목적의 지원금 지급

* 사업종료('21년 한시)이후 기부금 잔액에 대한 증여세 편성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187,670	144,247	△ 43,423	△ 23.1
○ 근로자복지지원	1,564	1,893	329	21.0
○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231	-	△ 231	순감
○ 퇴직연금사업운영	15,624	22,324	6,700	42.9
○ 근로복지기금 지원	15,459	23,278	7,819	50.6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4,792	5,854	1,062	22.2
○ 생활안정자금(융자)	150,000	88,462	△ 61,538	△ 41.0
○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	-	2,436	2,436	순증

② 신용보증 사업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이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302억원

- 고용노동부 실시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 중 신용보증 신청하는 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기금(생활안정자금(융자)), 고보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기금(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채기금(임금체불생계비융자)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계획(A)	'24계획(B)	증 감	
			(B-A)	%
계	33,550	30,195	△ 3,355	△ 10.0
○ 신용보증대위변제	33,550	30,195	△ 3,355	△ 10.0